

안산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9
----------	-----

제출연월일 : 2001. .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개정구분 : 일괄개정

개정이유

- 정부의 개혁과제중 하나인 행정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바, 자치법규상 아직까지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췌하여 조례 일괄개정을 통하여 잔존 규제를 혁파하고자 함.

주요골자

안산시 조례중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일괄 개정(삭제) 함 (안).

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5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주민공개외 제한)중제2호를 삭제한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용제한)제1호중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을 "공공질서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안산시공수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위촉기간)을 삭제한다.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이용제한)중 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타인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는등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안산시보육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종사자 연령 및 진보)를 삭제한다.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 양수)를 삭제한다.

안산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를 삭제한다.

안산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신청절차)제1항 단서중 "재정보증서를"을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을"로 한다.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과태료)를 삭제한다.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제1항중 “제11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를 삭제한다.

제18조(신고)제1항중 제6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정수처분)제1항중 제10호를 삭제한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경매사임면신청서의 첨부서류중 “1. 신원조회 입증서류 1부.”를 삭제한다.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회용품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제5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지도)” 및 “제8조(보고 및 검사등)”를 삭제한다.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의 첨부서류중 “3. 주민등록등본 1통”을 삭제한다.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주소(성명)변경신고의 별첨중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 거소변경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담당관 이 순 찬
	담당·팀장 직위·성명	법무담당 전 재 구
	담당자 성명·전화	김 천 영 (행정 281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안산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p>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u> 3. (생략) 4. (생략) 		<p>제5조(주민공개)의 제한)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		
<p>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u> 2. (생략) 3. (생략) 4.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p>제5조(사용제한)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공질서를</u>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안산시공수의조례		안산시공수의조례		
<p>제4조(위촉기간) ①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②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p>		<삭제>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안산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p>제11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염병 환자 2. <u>소행이 불량한 자</u> 3. <u>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노인이 아닌 자</u> 		<p>제11조(이용제한)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p> <p>5. 기타 회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보육조례</p>	<p>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등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보육조례</p>									
<p>제12조(종사자 연령 및 전보) ①위탁운영하는 시설장은 61세, 종사자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p> <p>②시장은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도시공원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도시공원조례</p>									
<p>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 양수)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양도, 양수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 및 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건축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건축조례</p>									
<p>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은 높이 2미터이상의 수종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20%;">식재밀도</th> <th style="width: 70%;">상록수의 비율(퍼센트)</th> </tr> </thead> <tbody> <tr> <td>교목</td> <td>0.2본이상</td> <td>상록수 : 40~60 낙엽수 : 40~60</td> </tr> <tr> <td>관목</td> <td>0.5본이상</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식재밀도	상록수의 비율(퍼센트)	교목	0.2본이상	상록수 : 40~60 낙엽수 : 40~60	관목	0.5본이상		
구분	식재밀도	상록수의 비율(퍼센트)								
교목	0.2본이상	상록수 : 40~60 낙엽수 : 40~60								
관목	0.5본이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p> <p>1. <u>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u></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 -----</p> <p>1. <u>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u></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안산시수도급수조례</p> <p>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의 시설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8조(신고) ①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u>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u></p> <p>제40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10. <u>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u></p> <p>11. ~ 13. (생략)</p> <p>② (생략)</p>	<p>안산시수도급수조례</p> <p>제12조(시설분담금) ①----- ----- ----- ----- <삭 제> -----</p> <p>제18조(신고) ①----- ----- -----</p> <p>1. ~ 5. (생략)</p> <p><삭 제></p> <p>제40조(정수처분) ①----- ----- -----</p> <p>1. ~ 9.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11. ~ 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p> <p>(별지 제4호서식) 경매사입면신청서 (서식 생략)</p> <p>첨부서류 : 1. <u>신원조회 입증서류 1부.</u> 2. <u>경매사자격증 사본 1부.</u> 3. <u>반명합판 사진 2매.</u></p>	<p>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p> <p>(별지 제4호서식) 경매사입면신청서 (서식 생략)</p> <p>첨부서류 :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p> <p><u>제4조(1회용품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①</u> <u>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시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촉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u></p> <p><u>제5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지도)</u> <u>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u></p> <p><u>제8조(보고 및 검사등)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u>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u> <u>2.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u></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p>	<p>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p> <p>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생략) ②최용신봉사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u> 5. ~ 7. (생략)</p> <p>(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서식 생략)</p> <p>첨부서류 1. ~ 2. (생략) 3. <u>주민등록등본 1통</u></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p> <p>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7.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서식 생략)</p> <p>첨부서류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p>
<p>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별지 제7호서식) 주소(성명)변경신고 (서식 생략)</p> <p>별첨 : <u>주민등록등본 1통(주소, 거소변경시)</u> 호적등본 1통(성명 변경시)</p>	<p>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p> <p>(별지 제7호서식) 주소(성명)변경신고 (서식 생략)</p> <p>별첨 : <u><삭제></u> 호적등본 1통(성명 변경시)</p>

안산시제정은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939
----------	-----

제안년월일 : 2001. 2. 16.

제안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안산시 건축조례 제12조를 보면 대지의 면적에 따라 5% 이상의 조경을 하도록 하고 있어 동조례 제13조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조경면적에는 변함이 없고,
- 동조례 제13조에는 조경 대상면적에 심어야할 나무의 규격, 종류, 식재 밀도등 동조례 12조의 조문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충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문 내용을 보면 주택의 형태, 높이, 위치등 주변 경관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이고도 단편적으로 건축주의 창의성등을 제약하고 있어, 동조례 제13조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아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안산시 관내 대지안의 조경등에 대한 현실태를 보면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합당하게 심어진 대지가 극히 적은 실정으로, 현행조례에서 대지안의 조경면적율과 식재기준까지 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이 시점에서 식재기준등을 삭제할 경우에는 자칫 대지안에서의 조경에 관한 시책을 한단계 후퇴하는 것으로 건축주 및 조경업자 등에게 비취질 수 있어,

-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 면적을대로의 이행 방안과 대안등을 마련한 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 골자

- 동 조례에 제13조 식재등 조경기준을 신설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산시건축조례중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수종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구분	식재밀도	상록수의 비율(퍼센트)
교목	0.2본이상	상록수 : 40~60 낙엽수 : 40~60
관목	0.5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교목중 10본 이상이 식재되는 낙엽수는 유실수를 20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목중 수고를 측정하는 나무는 수고가 4미터이상, 흉고직경을 측정하는 나무는 근원직경이 12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식재밀도를 0.1본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고가 5미터이상 흉고직경을 측정하는 나무는 흉고직경 14센티미터 이상, 근원직경을 측정하는 나무는 16센티미터이상인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식재밀도를 0.07본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안산시건축조례</p> <p>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안산시건축조례</p> <p>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수종을 6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구분</th> <th style="font-size: small;">식재밀도</th> <th style="font-size: small;">상록수의 비율(퍼센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교목</td> <td style="font-size: small;">0.2본이상</td> <td style="font-size: small;">상록수 : 40~60 낙엽수 : 40~60</td> </tr> <tr> <td style="font-size: small;">관목</td> <td style="font-size: small;">0.5본이상</td> <td></td> </tr> </tbody> </table>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는 교목중 10본 이상이 식재되는 낙엽수는 유실수를 20 퍼센트 이상 식재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목중 수고를 측정하는 나무는 수고가 4미터이상, 흉고 직경을 측정하는 나무는 근원직경이 12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식재밀도를 0.1본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고가 5미터이상 흉고직경을 측정하는 나무는 흉고직경 14센티미터 이상, 근원직경을 측정하는 나무는 16센티미터이상인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식재 밀도를 0.07본이상으로 할 수 있다.</p>	구분	식재밀도	상록수의 비율(퍼센트)	교목	0.2본이상	상록수 : 40~60 낙엽수 : 40~60	관목	0.5본이상	
구분	식재밀도	상록수의 비율(퍼센트)								
교목	0.2본이상	상록수 : 40~60 낙엽수 : 40~60								
관목	0.5본이상									